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16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상적인 용어 및 사업범위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시민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숙의예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각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신설함(안 제10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로 하고,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시민,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를 “시민이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민 등”을 “시민”로 하고, “과정에서의”를 “과정에서”로 한다.

안 제2조제4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시민 등”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민간과 시”를 “시민과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4조 중 “결정·집행”을 “결정”으로 하고, “참여할 권리가”를 “참여할 수”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시민 등”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조제3항 중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조제4항제1호 중 “서울시의원 2명”을 “사람 3명”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협

의회”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로 하고, “1명”을 “2명 이내”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안 제13조제2호 중 “질병 등 심신장애로”를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로 하고, 같은조제3호는 삭제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15조제5항 중 “요약하여”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위원장이”를 “규칙으로” 로 한다.

안 제18조는 삭제하고, 안 제19조를 안 제18조로 하며, 같은조 제목 중 “활성화”를 삭제하고, 같은조제1항 중 “시민 등”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는 삭제하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각각 제19조와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민”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u></p> <p>나. <u>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u></p> <p>다. <u>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u></p> <p>2. “시민민주주의”란 <u>시민,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u>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p> <p>3. “민관 협치”란 시와 <u>시민 등이</u>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u>과정에서</u>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p> <p>4. “공론”이란 시민이 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u>민주적 의사결정 방식</u>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p> <p>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u>시민 등</u>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u>를 말한다.</p> <p>가. <삭 제></p> <p>나. <삭 제></p> <p>다. <삭 제></p> <p>2. “시민민주주의”란 <u>시민이 서울특별시</u>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p> <p>3. “민관 협치”란 시와 <u>시민이</u>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u>과정에서</u>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p> <p>4.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u>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u>를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p> <p>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u>시민</u>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p>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5. 시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및 주민자치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해외체류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 ④ 생략

⑤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 제>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결과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삭 제>

제18조(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 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반환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협약)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서울특별시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
3. “민관 협치”란 시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

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3.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8조(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委員)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委員)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委員)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委任)된 위원(委員)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委員)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委員) 중 심의(審議)·조정(調整) 등과 관련한 안전(安全)에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위원(委員)은 해당 안전(安全)의 심의(審議)·조정(調整) 등에 대하여는 위원(委員)의 자격(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에게 해당 안전(安全)의 공정한 심의(審議)·조정(調整)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委員)을 해당 안전(安全)에서 제척(制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委員會) 안전(安全)에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자가 위원(委員)에게 공정한 심의(審議)·조정(調整)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情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委員會)에 기피(忌避) 신청(申請)을 할 수 있고, 위원회(委員會)는 의결(議決)로 해당 위원(委員)의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決定)한다. 이 경우(場合) 기피(忌避) 신청(申請)의 대상(對象)인 위원(委員)은 그 의결(議決)에 참여(參與)하지 못한다.

④ 위원(委員)이 제1항(項) 또는 제3항(項)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安全)의 심의(審議)·조정(調整)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委員)이 다음 각 호(號)의 어느 하나(一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任期) 중이라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위원(委員) 스스로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하기 어렵(難)다는 의사(意事)를 밝힌 경우
2. 장기(長期) 치료를 요(要)하는 질병(疾病) 또는 6개월(6個月) 이상의 해외(海外)여행(旅行)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운영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기구 중 회

의에 상정된 의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의결과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민민주주의 확산등

제18조(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 (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